

울산 우정 에피트(조합원 취소분)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6.27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2-254-7771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6.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6.27.(금)	25.07.07.(월)	25.07.08.(화)	25.07.09.(수)	25.07.16.(수)	25.07.19.(토)~ 25.07.23.(수)	25.07.27.(일)~ 25.07.29.(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brand.hldni.com/ulsanwoojung>)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27.(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06.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7.07.(월)	2025.07.08.(화)	2025.07.09.(수)	2025.07.16.(수)	25.07.19.(토)~ 25.07.23.(수)	2025.07.27.(일)~ 2025.07.29.(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12, 2층)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울산광역시 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과 - 27815호(2025. 06. 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74-8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5개동 총 533세대 중 조합원취소분 55세대
[특별공급 30세대(기관추천 5세대, 다자녀가구 6세대, 신혼부부 12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237	01	059.9704A	59A	59.9704	20.1756	80.1460	46.9553	127.1013	32.5217	18	2	2	4	1	2	11	7
	02	059.9168B	59B	59.9168	20.9510	80.8678	46.9134	127.7812	32.4927	3	0	0	1	0	0	1	2
	03	084.8539A	84A	84.8539	25.5956	110.4495	66.4386	176.8881	46.0160	28	3	3	6	1	3	16	12
	04	084.8405B	84B	84.8405	26.6140	111.4545	66.4280	177.8825	46.0087	5	0	1	1	0	0	2	3
	05	084.9000C	84C	84.9000	27.1021	112.0021	66.4747	178.4768	46.0410	1	0	0	0	0	0	0	1
합 계										55	5	6	12	2	5	30	25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0	0	0	0	1
	장기복무 제대군인	1	0	0	0	0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0	0	1	0	0	1
	장애인	0	0	1	0	0	1
	중소기업 근로자	0	0	1	0	0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	0	3	1	0	6
신혼부부 특별공급		4	1	6	1	0	1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0	1	0	0	2
생애최초 특별공급		2	0	3	0	0	5
합 계		11	1	16	2	0	3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라인	층	해당 세대수	분양가			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잔금
					대지비	건축비	세대별분양가	5%	15%	15%	15%	15%	35%
								계약시	25-09-30	25-12-31	26-04-30	26-08-31	입주예정일
59A	18	101동 3,4라인	2층	1	189,340,598	301,959,402	491,300,000	24,565,000	73,695,000	73,695,000	73,695,000	73,695,000	171,955,000
			6~9층	1	189,340,598	314,759,402	504,100,000	25,205,000	75,615,000	75,615,000	75,615,000	75,615,000	176,435,000
			10~15층	3	189,340,598	317,259,402	506,600,000	25,330,000	75,990,000	75,990,000	75,990,000	75,990,000	177,310,000
			16~20층	2	189,340,598	322,359,402	511,700,000	25,585,000	76,755,000	76,755,000	76,755,000	76,755,000	179,095,000
			25~29층	1	189,340,598	340,359,402	529,700,000	26,485,000	79,455,000	79,455,000	79,455,000	79,455,000	185,395,000
		104동 1라인	10~15층	1	189,340,598	301,959,402	491,300,000	24,565,000	73,695,000	73,695,000	73,695,000	73,695,000	171,955,000
			16~20층	1	189,340,598	306,859,402	496,200,000	24,810,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74,430,000	173,670,000
		104동 3라인	16~20층	2	189,340,598	330,159,402	519,500,000	25,975,000	77,925,000	77,925,000	77,925,000	77,925,000	181,825,000
		105동 1,2라인	3~5층	1	189,340,598	319,759,402	509,100,000	25,455,000	76,365,000	76,365,000	76,365,000	76,365,000	178,185,000
			6~9층	1	189,340,598	322,359,402	511,700,000	25,585,000	76,755,000	76,755,000	76,755,000	76,755,000	179,095,000
			10~16층	1	189,340,598	324,959,402	514,300,000	25,715,000	77,145,000	77,145,000	77,145,000	77,145,000	180,005,000
			21~24층	2	189,340,598	343,159,402	532,500,000	26,625,000	79,875,000	79,875,000	79,875,000	79,875,000	186,375,000
25~29층	1		189,340,598	348,359,402	537,700,000	26,885,000	80,655,000	80,655,000	80,655,000	80,655,000	188,195,000		
59B	3	104동 2라인	10~15층	1	189,171,179	324,728,821	513,900,000	25,695,000	77,085,000	77,085,000	77,085,000	77,085,000	179,865,000
			16~20층	1	189,171,179	329,928,821	519,100,000	25,955,000	77,865,000	77,865,000	77,865,000	77,865,000	181,685,000
			21~24층	1	189,171,179	342,928,821	532,100,000	26,605,000	79,815,000	79,815,000	79,815,000	79,815,000	186,235,000
84A	28	101동 1라인	10~15층	2	267,903,282	423,696,718	691,600,000	34,580,000	103,740,000	103,740,000	103,740,000	103,740,000	242,060,000
			25~29층	1	267,903,282	455,096,718	723,000,000	36,150,000	108,450,000	108,450,000	108,450,000	108,450,000	253,050,000

		102동 1,2,3라인	3~5층	1	267,903,282	416,696,718	684,600,000	34,23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239,610,000		
			6~9층	2	267,903,282	420,196,718	688,100,000	34,405,000	103,215,000	103,215,000	103,215,000	103,215,000	240,835,000		
			10~15층	2	267,903,282	423,696,718	691,600,000	34,580,000	103,740,000	103,740,000	103,740,000	103,740,000	242,060,000		
			16~20층	3	267,903,282	430,596,718	698,500,000	34,925,000	104,775,000	104,775,000	104,775,000	104,775,000	244,475,000		
			21~24층	1	267,903,282	448,096,718	716,000,000	35,8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250,600,000		
		102동 5라인	16~20층	2	267,903,282	423,696,718	691,600,000	34,580,000	103,740,000	103,740,000	103,740,000	103,740,000	242,060,000		
			21~24층	1	267,903,282	440,996,718	708,900,000	35,445,000	106,335,000	106,335,000	106,335,000	106,335,000	248,115,000		
		103동 1,2,3라인	3~5층	1	267,903,282	416,696,718	684,600,000	34,23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239,610,000		
			6~9층	2	267,903,282	420,196,718	688,100,000	34,405,000	103,215,000	103,215,000	103,215,000	103,215,000	240,835,000		
			10~15층	2	267,903,282	423,696,718	691,600,000	34,580,000	103,740,000	103,740,000	103,740,000	103,740,000	242,060,000		
			16~20층	2	267,903,282	430,596,718	698,500,000	34,925,000	104,775,000	104,775,000	104,775,000	104,775,000	244,475,000		
			21~24층	2	267,903,282	448,096,718	716,000,000	35,8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250,600,000		
			25~29층	1	267,903,282	455,096,718	723,000,000	36,150,000	108,450,000	108,450,000	108,450,000	108,450,000	253,050,000		
		103동 5라인	10~15층	1	267,903,282	416,796,718	684,700,000	34,235,000	102,705,000	102,705,000	102,705,000	102,705,000	239,645,000		
			16~20층	1	267,903,282	423,696,718	691,600,000	34,580,000	103,740,000	103,740,000	103,740,000	103,740,000	242,060,000		
			21~24층	1	267,903,282	440,996,718	708,900,000	35,445,000	106,335,000	106,335,000	106,335,000	106,335,000	248,115,000		
		84B	5	102,103동 4라인	10~15층	1	267,861,364	423,038,636	690,900,000	34,545,000	103,635,000	103,635,000	103,635,000	103,635,000	241,815,000
					16~20층	2	267,861,364	430,038,636	697,900,000	34,895,000	104,685,000	104,685,000	104,685,000	104,685,000	244,265,000
					21~24층	1	267,861,364	447,438,636	715,300,000	35,765,000	107,295,000	107,295,000	107,295,000	107,295,000	250,355,000
					26~29층	1	267,861,364	454,438,636	722,300,000	36,115,000	108,345,000	108,345,000	108,345,000	108,345,000	252,805,000
84C	1	101동 2라인	25~29층	1	268,048,831	450,551,169	718,600,000	35,930,000	107,790,000	107,790,000	107,790,000	251,510,000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p>※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p>※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p> <p>※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p>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 군인포함) 등 : 울산지방보훈청 보상지원팀 ■ 중소기업 근로자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p> <p>■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p> <p>-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p> <p>■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p> <p>■ ②배점</p> <table border="1" data-bbox="309 550 2128 1380">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40</td> <td>4명 이상</td> <td>40</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3명</td> <td>35</td> </tr> <tr> <td>2명</td> <td>25</td> </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15</td> <td>3명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2명</td> <td>10</td> </tr> <tr> <td>1명</td> <td>5</td> </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 <td rowspan="2">5</td> <td>3세대 이상</td> <td>5</td> <td rowspan="2">-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 </tr> <tr> <td>한부모 가족</td> <td>5</td> </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 <td rowspan="3">20</td> <td>10년 이상</td> <td>20</td> <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5</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 <td rowspan="3">15</td> <td>10년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0</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5</td> </tr> <tr> <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 <td>5</td> <td>10년 이상</td> <td>5</td> <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 </tr> </tbody> </table>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4.01. ~ 06.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data-bbox="331 675 2114 1406"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 colspan="2">가점구분</th> <th>점수</th> <th colspan="2">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 colspan="2">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 colspan="2">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 colspan="2">1년 미만</td> <td>2</td> <td colspan="2">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 colspan="2">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 colspan="2">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 colspan="2">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 colspan="2">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 colspan="2">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 colspan="2">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 colspan="2">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 colspan="2">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 colspan="2">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 colspan="2">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 colspan="2">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 colspan="2">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 colspan="2">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 colspan="2"></td> <td></td> </tr> <tr> <td rowspan="5">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5">35</td> <td colspan="2">0명</td> <td>5</td> <td colspan="2">4명</td> <td>25</td> </tr> <tr> <td colspan="2">1명</td> <td>10</td> <td colspan="2">5명</td> <td>30</td> </tr> <tr> <td colspan="2">2명</td> <td>15</td> <td colspan="2">6명 이상</td> <td>35</td> </tr> <tr> <td colspan="2">3명</td> <td>20</td> <td colspan="2"></td> <td></td> </tr> <tr> <td colspan="2"></td> <td></td> <td colspan="2"></td> <td></td> </tr> <tr> <td rowspan="9">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9">17</td> <td colspan="2">6개월 미만</td> <td>1</td> <td colspan="2">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 colspan="2">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 colspan="2">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 colspan="2">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 colspan="2">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 colspan="2">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 colspan="2">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 colspan="2">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 colspan="2">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 colspan="2">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 colspan="2">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 colspan="2">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 colspan="2">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 colspan="2">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 colspan="2">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 colspan="2">7년 이상 ~ 8년 미만</td> <td>9</td> <td colspan="2"></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비고</p>	<p>■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p> <p>-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p> <p>■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09 959 2132 151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단계</th> <th style="width: 20%;">소득구분</th> <th style="width: 6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 style="width: 5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 style="width: 5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 style="width: 5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각 단계별 낙점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점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4.01. ~ 06.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25%;">가점제</th> <th style="width: 25%;">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r> </tbody> </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가점항목</th> <th style="width: 15%;">가점상한</th> <th style="width: 20%;">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20%;">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5%;">점수</th> </tr> </thead> <tbody> <tr> <td>①무주택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8</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외국인 직계존속</p>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p>-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p>-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p> <p>-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소유여부 및</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p>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내용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16.(수) ~ 2025.07.25.(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7.1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입주대상자(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일정

서류제출 및 심사기한	대상자	제출장소	유의사항
2025.07.19.(토) ~ 2025.07.23.(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일반공급(1,2순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12, 달동)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27.)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자격확인 구비서류는 아래의 특별공급(일반공급 포함) 구비서류 참고하시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관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모든정보표시)	본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 (모든정보표시)	배우자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
	○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본인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장이 정하여 선정하므로 해당서류는 제출제외)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기록대조일은 해당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단신부임)하고 있는 경우 제출 ※ 단,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단, 다음의 경우 부양가족 불인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확인서 1통
		○	해외체류(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단신부임)하고 있는 경우 제출 ※ 단,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해외 출장자 : 파견·출장명령서 -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제출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본인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특별공급			직계존속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이혼,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자격요건 확인서	자녀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	재직증명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증빙서류)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현재 또는 작년 출산 휴가를 받았을 경우 : 출산 전월 휴가급여지급 명세서(월별)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내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확인(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배우자 및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	• 피부양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가구원수 포함여부 확인 필요시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발급. • 직계존.비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	재직증명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아래 [표1] 소득증빙서류 및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서류구분</th> <th style="width: 45%;">확인자격</th> <th style="width: 15%;">비고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td> <td>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td> <td>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td> <td rowspan="2">29p 참조</td> </tr> <tr> <td>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td> <td>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td> </tr> </tbody> </table> <p>※ 해당년도에 소득세 납부 및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p>	구분	서류구분	확인자격	비고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	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29p 참조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
	구분	서류구분		확인자격	비고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		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29p 참조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납부내역증명 포함)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대리인신청서 추가서류	○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부적격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미원회신,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자료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필수)	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 (매입,매출 기재된 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 관리 공단 ②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원천징수부 ② 원청징수 이행상황신고서 ③ 표준재무제표(당기 순이익 등 전부표기) ④ 법인사업자등록증 ※ 법인대표 + 근로자인 경우 : ①,②,④ ※ 법인대표인 경우(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③,④	①,②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③ 회계사무실 ④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유권해석)	① 주민센터
의료급여수급권자		① 수급권자 자격취득 통보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필수)	① 주민센터 ②,③ 해당직장 /세무서
일용직 근로자		①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③ 과거 근무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필수) 또는 해촉증명서, 경력증명서 ④ 현재 근무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필수)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국세청 홈택스 발급 ②,③,④ 해당직장
프리랜서 / 비정규직 근로자		①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③ 과거 근무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필수) 또는 해촉증명서, 경력증명서 ④ 현재 근무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필수)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국세청 홈택스 발급 ②,③,④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3) 전년도 연금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 1)의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2)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입증 서류 반드시 제출. ※ 3)의 경우 ③ 연말정산한 소득금액 증명 또는 ④ 연금지급명세서 제출.	① 홍보관 비치 ②,③ 국세청 홈택스 발급 ④ 국민연금공단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③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농업 또는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① 정부24, 애그릭스, 주민센터 ②,③ 국세청 홈택스 발급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한함)		① 출산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 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상시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입증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국세청(홈텍스)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납부내역증명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①,② 세무서(홈텍스) ③,④ 해당직장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 기준 입증 제출서류

구분	자산보유기준	해당자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이하	청약자 및 그 세대원 전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포함)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 군, 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d>부동산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재산세 과세 내역서 (해당시군구청 발급)</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비고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 군, 구청장)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비고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 군, 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재산세 과세 내역서 (해당시군구청 발급)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을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산서류 제출예제	구분	부동산소유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해당관련 서류							
	①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부동산자산이 있거나, 없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열람하기 > 해당물건지 주소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동산자산이 없어도 발급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해당페이지 스크린샷 인쇄. ※ 공동인증서 등 반드시 필요. ※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거래은행에서 발급가능.			재산세 과세 내역서(해당시군구청 발급)
②주택외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소유자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부동산자산이 있거나, 없거나 해당페이지 스크린샷 인쇄. ※ 공동인증서 등 반드시 필요. ※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거래은행에서 발급가능.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열람하기 > 해당물건지 주소입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동산자산이 없어도 발급가능.	■ 재산세 과세 내역서 (해당시군구청 발급)
③토지소유자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부동산자산이 있거나, 없거나 해당페이지 스크린샷 인쇄. ※ 공동인증서 등 반드시 필요. ※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거래은행에서 발급가능.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열람하기 > 해당물건지 주소입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동산자산이 없어도 발급가능.	■ 토지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토지) ※정부24(공동인증서) 또는 주민센터(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 부동산 소유자는 각 유형별 해당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관련 서류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가점제 청약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일반공급 (가점제, 추첨제 예비입주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	· 건분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청약신청지역 거주지역 등 확인용, 기록 대조일을 본인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가점제, 예비입주자)		○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분리세대)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3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1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가점제 당첨자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인(당첨자 접수일/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서류는 공급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함)
- ※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서류 외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내 기간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거주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우리은행	1005-304-507957	우리자산신탁(주)	입금 시에는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101101홍길동"이라고 기재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계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급계약은 취소합니다.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 확인 후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분양금액의 연체, 계약 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 검색을 의뢰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최대 1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됨]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청약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 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은 무효처리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릅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한다.(동법 제57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자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검증서류 일체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는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용에 한함.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 입금증	-	세대별 아파트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각 은행별 모바일 입금내역을 캡처한 이미지 포함) ※ 주택전시관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전자수입인지 사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신고필증	- -	건본주택 비치 건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홍보관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재외국민 및 내국인 배우자 등)을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표기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람.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 ※ 사업주체 등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요청을 할 수 있음.

■ 계약자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이자후불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60%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 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사사항이 아님,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 내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합니다.
 -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 대출보증 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신용 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시 이자후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총분양대금의 10%)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는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 약정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 납입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부담(납부)하며(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 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체의 중도금 이자후불등 판촉조건에 상응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대출 이자는 별도의 약정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 대출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 해야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 불량 거래자, 타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초과, 주택도시보증 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각 중 대출보증서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등에 의해 제한 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 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 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 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인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 금융거래 신용 불량자 "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전까지 대출금을 상환 하거나 담보 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 품목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추가 선택 품목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승인대상(분양가상한제 비대상)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

1)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비고
	총금액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59A, 59B	17,600,000	3,520,000	14,080,000	
84A, 84B, 84C	23,100,000	4,620,000	18,480,000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분양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홍보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상하 세대간 확장구간 내력벽의 연속성 및 우수관, 선홍통 등의 제거로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생활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 및 상부 또는 하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 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미관을 저하하고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옆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확장 세대의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 세대 및 확장 세대의 인접 벽체에 단열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내 실사용 폭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해당 발코니 천장 및 바닥에 상하부층의 발코니확장 여부에 따라 단열재 등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고, 해당 단열재는 제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침실1 발코니(1개소) 및 다용도실을 제외하고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배수 및 우수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람.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콘센트류,스위치류)의 개수, 타입, 배치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204-620217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추가옵션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에 유의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201호 당첨자(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101동1102호 당첨자(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102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시 상기 계좌로 입금후 홍보관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관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불가]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등)될 경우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없음)
-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1) 천장형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선택안	설치 개소	설치위치	공급금액	모델명(LG제품)
59A	선택1	2	거실+침실1	3,900,000	* 미 선택시 냉매배관은 2개소(거실,침실1)만 설치
	선택2	4	거실+침실1, 2, 3	6,500,000	
59B	선택1	2	거실+침실1	3,900,000	
	선택2	4	거실+침실1,2,3	6,500,000	
84A	선택1	2	거실+침실1	4,000,000	
	선택2	4	거실+침실1,2,3	6,700,000	
84B	선택1	2	거실+침실1	4,000,000	
	선택2	4	거실+침실1,2,3	6,700,000	
84C	선택1	2	거실+침실1	4,000,000	
	선택2	4	거실+침실1,2,3	6,700,000	

2) 인테리어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설치내용	공급금액					비고	
		59A	59B	84A	84B	84C		
인테리어	1. 현관중문	59A, 84A, 84B, 84C : 3연동 중문설치 59B : 터닝 2도어	1,200,000	1,4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 미선택 시 현관 날개벽 설치
	2. 주방마감특화	상판/벽 : 유럽산세라믹타일+사각싱크볼+터치식수전	2,800,000	2,900,000	3,400,000	3,800,000	3,800,000	* 미 선택시 벽면은 벽타일, 상판은 MMA인조석, 기본싱크볼/수전 설치
	3. 드레스룸특화	선택1 : 벽판넬조명선반+서랍장	2,500,000	2,300,000	3,400,000	3,300,000	3,100,000	* 미선택시에는 일반 봉타입선반 기본 설치
		선택2 : 벽판넬조명선반+서랍장+의류관리기(삼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4,600,000	4,500,000	4,300,000	* 드레스룸옵션 선택1,2,3 중 택1
	선택3 : 벽판넬조명선반+서랍장+의류관리기(엘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4,600,000	4,500,000	4,300,000	* 선택2, 선택3 의류관리기 옵션 선택시 도어색상 선택불가하며, 시스템선반 일부 축소됨	

3) 가전기기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설치내용		공급금액					비고	
			59A	59B	84A	84B	84C		
가전기기	1. 전기쿡탑	2구 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	선택1 : 삼성(NZ63T5601AK)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미 선택시 3구 가스쿡탑 기본설치 *옵션 선택1, 2, 3, 4 중 택1
			선택2 : 엘지(BEY3GBI)	950,000	950,000	950,000	950,000	950,000	
		3구인덕션	선택3 : 삼성(NZ63T5701AK)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선택4 : 엘지(BEI3GQBI)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2. 전기오븐		선택1 : 삼성(NQ36A655CK)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미 선택시 가구수납(도어)
			선택2 : 엘지(MZ385EBTA)	48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옵션 선택 시에만 해당 용도 콘센트 설치
	3. 식기세척기		선택1 : 삼성(DW60T7065SS)	870,000	870,000	870,000	870,000	870,000	*미 선택시 가구수납(도어)
			선택2 : 엘지(DIB22S)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옵션 선택 시에만 해당 용도 콘센트 설치
	4. 냉장고 Set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선택1 : 삼성 - 냉장고 1도어 : RR40C7995AP(우) RR40C7895AP(좌) - 냉동고 1도어 : RZ34C7965AP(우) RZ34C7865AP(좌) - 김치냉장고 1도어 : RQ34C7945AP(우) RQ34C7845AP(좌)	5,500,000	5,500,000	5,500,000	5,500,000	5,500,000	*미 선택시 냉장고 설치공간 제공(상부장 기본설치)
			선택2 : 엘지 - 냉장 1도어 : BC1L2AA - 냉동 1도어 : BC1F2AA - 김치냉장고 1도어 : BC1K2AAC	5,500,000	5,500,000	5,500,000	5,500,000	5,500,000	

4) 전기/설비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설치내용		공급금액					비고
			59A	59B	84A	84B	84C	
전기	1. 고급형 LED조명	거실D/L, 침실등(안방등 포함), 식탁등, 아일랜드D/L, 복도D/L, 욕실장 하부간접등	3,500,000	3,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미선택시 기본형 LED조명 설치 색온도 기능 없음 : 거실 D/L 디밍/색온도 기능 없음 : 아일랜드, 복도, 욕실장 하부 센서등
설비	2. 욕실특화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 양변기 + 반다리일체형 세면기 + 세면 플랫폼수전 + 선반형 욕조수전/슬라이드바 or 선반형 레인샤워수전)	3,900,000	3,900,000	3,900,000	3,900,000	3,900,000	욕실1, 2 일괄 선택 미선택시 기본형 설치
	3.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경동나비엔] 헤파필터 적용, 에어모니터 포함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미선택시 일반 전열교환기 설치
	4. 복합환풍기	[힘펠] 환기+온풍+제습+드라이 기능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욕실1, 2 일괄 선택 미선택시 기본형(배기전용) 환풍기 설치

5) 유상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우리은행	1005-304-636863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 ※ 유상옵선 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최초옵선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 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201호 당첨자(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101동1102호 당첨자(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102홍길동'으로 기재)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유상옵선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추가 선택품목공급계약을 체결·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공동주택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과 별개사항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빌트인 가구 매립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빌트인 설치에 따른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홍보관 내 건립세대는 59A와 84A 타입입니다. 미건립세대인 59B는 59A, 84B.84C는 84A의 옵션 마감자재 사양을 따르며, 평면에 따라 가구의 규격과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현관 중문 제외)
- 홍보관에 설치된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성능 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등급 수준 또는 등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별도계약 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옵선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유상옵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옵선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동일 제품 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별도로 통지하는 계약체결 일정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모든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선택은 발코니 확장시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 선택시 관련 날개벽이 삭제되거나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선 품목에 따라 본 공사 시 커튼 박스의 길이 및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현관 중문 미선택 시 신발장 측면에 날개벽에 설치되며,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사이즈)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타일 및 석재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눔 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일 및 석재류 요철에 의한 줄눈 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상옵선 품목인 세라믹 상판과 기본 품목인 인조대리석(MMA)는 상판 두께가 다르게 설치됩니다.
- 주방 기본 MMA 상판 자재는 공급사의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제품의 성능개선, 디자인개선 등의 사유) 및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 등에 따라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옵션 미선택 시 벽체는 일반 타일(600X300), 상판은 인조대리석(MMA) 상판으로 변경되며, 기본 싱크볼로 변경 설치됩니다.
- 옵션 가구용 조명의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용 조명이 포함된 옵션 품목 미선택 시 해당 조명은 미설치됩니다.
- 옵션 일반가구, 주방가구가 시공되는 부위의 바닥, 벽,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바닥 일부 난방 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선택(기본/옵선)에 따라 가구의 형태와 규격, 마감재가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 표면재의 무늬, 패턴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옵션 마루 바닥재는 자재의 수급 시점에 따라 마루코어재(바디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패턴과 색상이 균일하지 않거나 표면 텍스처, 폭, 두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특화 옵션 품목 선택 시 시공범위는 해당 기본 마루가 설치된 바닥 공간 일체가 텍스처 광폭 마루로 일괄 적용 및 시공됩니다.
- 바닥 실리콘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품목의 전자제품은 제품별로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중 한개사만 선택 가능합니다.
- 주방 가전제품 옵션 선택 시에만 해당 용도의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미 선택 시 기본 수납장(도어마감)이 동일 규격으로 시공됩니다.
- 냉장고 SET 옵션 품목 미선택 시 냉장고장(상부장 또는 측면 키큰장)만 설치되며, 냉장고의 종류에 따라 돌출될 수 있으며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SET옵션 품목 선택 시 해당 브랜드의 냉장고 도어 색상은 선택 가능하며, 도어 개폐방향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옵션 계약 시 확인 바랍니다.
- 1도어 냉장/냉동/김치 냉장고 Set(유상옵션)은 글라스 도어패널 마감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홍보관에 위치 표기만 하였으며, 실 시공 시 크기, 색상, 마감 재질 및 형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타입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가구부위 바닥면은 단차가 없으며, 가구는 바닥면의 수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 옵션 품목 미 선택시 3구 가스쿡탑으로 기본 시공됩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에만 해당부위에 콘센트가 설치되며, 미선택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서, 에어컨의 용량 및 배관길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타입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품목 선택 시, 기본 냉매매립배관(거실, 침실1)은 미설치됩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 에어컨용), 침실1(벽걸이 에어컨용)2개소에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선택시 기본제공 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침실1)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적용되는 기본 매립 냉매배관 2개소(거실,침실1)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실제 시공시 실내기 설치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상부 세대 비확장 선택시 천장 단열재 두께변경 및 시스템에어컨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공기청정기능 없음)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실내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드레인배관은 침실1 발코니 또는 세탁실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골조 공사완료 후 시스템 에어컨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기본 매립 냉매배관(거실, 침실1)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확장 및 유상옵션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조명기구, 배선기구, 통합스위치, 대기 전력차단 스위치 등의 위치, 사양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작동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필터교체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옵션 미선택 시 세대환기 룸컨트롤러의 형태가 변경되며, 이동식 에어모니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고급형 도기 수전류 유상옵션 금액은 유상 옵션 미선택시 적용되는 기본도기류, 수전류, 부부욕실 비데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유상옵션 품목 선택여부에 따라, 기본형 환풍기와 옵션형 환풍기의 설치 위치는 달라지며, 옵션형 복합환풍기는 무선리모콘이 제공됩니다.
- 전기렌지(인덕션,하이라이트등)를 옵션품목으로 설치하여도 기본으로 제공하는 가스배관 및 밸브 설치됩니다. 또한, 가스밸브, 배관 일부는 노출 시공되며, 제품 크기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대하여는 홍보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급형 LED조명 선택 시에만 디밍 또는 디밍/색온도 기능이 추가된 옵션형 통합스위치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시공되며, 개별적인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고급형 LED조명 중 욕실장 하부간접등은 전용 센서로 동작됩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당 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27년 1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미납한 공급대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용역원휴게실,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 GXR),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홍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등 주위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제기하실 수 없으며, 단지외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본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형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층별, 형별 등에 따라 공급금액의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및 주차장 진출입출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 세대가 속한 동,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후 해당시설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104동 1호라인은 일조시간이 미확보되며, 이에 따른 피해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등에 적합 하도록 시공 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합니다. (마감재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누수, 주변세대 피해 등)
- 전화상담 및 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 선호도 반영을 원할경우 잔금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 등 야간경관 조명등의 환경권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주의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시설 인접 동·호 세대는 입주후 해당 시설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단지배치도 및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형도와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내 경로당 입주동, 지하주차장입구, 재활용 분리수거장, 근생시설, 어린이놀이터 인접 동·호세대는 단지과 세대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 배치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홍보관으로 서면통보 하시기 바라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인허가 및 실 시공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문주,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축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배치상 자전거보관대,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경관조명, 주차장 진입,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홍보관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계획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구조개선, 시공성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 함)
- 사업부지내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며 공공보행통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해당대지의 지분은 입주자의 소유이나 그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보행통로 부분의 소유권은 입주자에게 있고, 입주자가 주 사용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매년 종합부동산세납부 및 차후 공공보행통로 관리/복구시 원인가 부담금의 징수는 물론 공공보행통로의 유지 관리 또한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단 입주 후 유지관리상 공공보행통로 보수기관이 보수하였을 시는 입주자가 공공보행통로의 해당 면적만큼 유지보수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공보행통로의 엘리베이터 및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분양 후 변경될 수 있기에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 부터 60일간 각종 출입구 게시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 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가구,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상가는 공동주택 단지과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전 기타 자세한 주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 개발, 일조권, 조망권, 혐오시설,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한 이유로 단지과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내 미확보 국유지인 우정동 274-88, 762-43, 762-45, 762-32 번지 국토교통부 소유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절차를 통해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단지내 생활쓰레기 배출시 별도의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 하자 담보 존속 기간 및 하자 보수

- 하자 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 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타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9조에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벌칙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 법령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 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설계관련 주요고지 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1. 일반사항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릅니다.
- 본 사업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자금보증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 우리은행에서 대출 지원받은 사업장으로 해당 대출은 입주시 입주자 명의로 대환될 수 있습니다.
- 사전홍보자료와 입주자모집공고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및 홍보관이 우선하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전 홍보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분양면적 및 공유하는 대지지분은 설계변경, 공부정리 절차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구비서류 등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질서 교란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새시,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약취, 혐오시설 유무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홍보관에 표현된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된 참고용 자료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색채디자인 등은 외부 조명 및 적용면의 크기에 따라 달라보이는 착시가 있을 수 있으며, 단위세대 평면도는 주동 동호별 라인에 따라 외부 마감재가 상이할 수 있어 이는 배제하여 표현되어 있습니다.
- 홍보관 내 「주택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를 비치하오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장에 사용된 주택의 명칭, 브랜드, 디자인 등은 향후 관할관청의 기준 및 향후 시공사의 브랜드 관리 정책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므로 본 사업장 건축물의 브랜드명, 디자인 및 색채, 동호수 표기 등은 현재 안내된 내용대로 유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마감재 및 색채가 변경됨을 인지하고 “을”은 계약 체결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을”은 분명히 인지하였음에 동의합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

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입주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등급 VII-0.24g입니다.

2. 인허가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측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문주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및 난간 형태 및 색상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홍보관, 아파트 배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조경면적 등),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아파트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고려한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주변환경

- 본 아파트 주변 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주변 소공원, 주차장의 세부계획 등은 관청계획,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로 인한 분진포함), 냄새,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전에 사업부지 여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약취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주변 도로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현장 여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장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주변 기반시설과 유허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레벨과 단지 주변 도로의 레벨차에 따라 경계부 처리방식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교육

- 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학교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통학거리와 관련하여서는 청약 및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유치원은 유치원1구역(태화다운·성안지구)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는 양사초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 중학교는 태화다운중학교군 및 복산·병영중학교군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는 중부고등학교군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 학생배치는 향후 주변 개발 사업 및 학생발생 추이, 교육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시설계획

- 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지 중앙부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며,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없고, 인접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4동 1호라인은 일조시간이 미확보되며, 이에 따른 피해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등하원차량의 정차공간이 104동 인근에 조성되며, 일부 세대는 승하차시 소음 및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 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주 후 주차를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발생하는 다툼 등의 문제 사항은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동 출입구 등의 공용부분은 주동의 진입방식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홀, 옥상, 커뮤니티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로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차량 진출입 시 통행 소음 및 경고등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점자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의 협의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아파트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바닥포장, 지상 및 지하의 주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와 외부도로의 경계는 인허가 관청의 지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관의 분양 모형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이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아파트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
- 아파트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천창, DA)이 설치되며, 아파트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쓰레기보관소, 재활용 창고, 수목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동별 쓰레기보관소 이용 거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 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 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 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출입구(주출입구, 부출입구, 보행자 출입구, 비상차량 동선 출입구 등)의 선형 및 레벨은 현황에 맞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아파트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자연석 쌓기가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동측 소공원과 레벨차로 인하여 계단과 옹벽이 설치되며, 관계기관의 협의의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전기공급을 위해 한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동 계획은 동별 평형 구성 및 층수에 따라 코어계획이 상이하여, 엘리베이터홀 창호의 크기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보관소 설치 위치는 인허가 진행 시 결정된 사항으로, 각 세대별 이동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에서는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는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리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소음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3동 옥상에는 소화수조가 설치되오니 계약체결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됩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근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나,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옥상은 사유지가 아니므로 인접 세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옥상층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단위세대 사생활 침해가 없는 시야각을 고려한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문주, 경비실, D/A(설비환기구), 외부EV실/계단실 등 외부시설물의 형태, 디자인, 마감재 등은 기능 및 외관 개선을 위해 인허가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 내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법적 기준에 따른 미술 장식품이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위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설치물 주변 인접세대는 소음, 조망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 일부에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입주자 공동시설, 저수조, 펌프 등 설비시설은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인접동 입주민께서는 모형과 카다로그 상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엘리베이터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실에는 공용 또는 타 실을 위한 설비 배관 및 덕트, 가스배관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복도 천장고는 시공시 일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천장 내 기계설비 배관 및 덕트, 소방 및 전기 트레이 등으로 유효 천장고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 및 지붕에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시설(어린이놀이터, 옥외운동공간, 옥외휴게공간, 부대복리시설 등)의 위치는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옥외운동시설, 옥외휴게시설, 쓰레기수거함,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관계기관의 협의의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목식재, 옥외 시설물, 포장은 관계기관의 협의의견 및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규모, 자재,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옥상에 저관리형 옥상녹화가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협의의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차량활동구역, 에어매트 주변 녹지에는 소방활동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경 수목이 식재되지 않는 구간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시야간섭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 입주시 단지 조경 및 주동배치형태 등의 이유로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이나 해충 발생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분양관련 카다로그, 팸플렛의 CG 및 홍보관 모형상의 조경 수목, 옥외 시설물, 포장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협의의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홍보관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6. 입면, 색채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 구조물은 향후 인허가 기관의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 장식탑 및 단지 시설물(문주 등)은 시공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 및 마감이 조정되고, 기둥 및 벽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측면 로고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 및 마감 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의 입면 및 색채 등을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부대복리시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일부 실 배치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자료나 모형상의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위치에 따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본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은 용도별로 각각 분리되어 설치되며 이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임의로 변경 또는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파트에 설치되는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등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 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등이 건축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을 위한 실외기가 외부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및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이용 소음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천장 내 기계설비 배관 및 덕트, 소방 및 전기 트레이 등으로 유효 천장고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 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가구, 기구,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단위세대

-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성능 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 여건 또는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 수준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59B는 59A, 84B.84C는 84A의 마감자재 사양을 따르며, 평면에 따라 가구의 규격과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창호 및 유리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 사양, 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창호 본 공사 시 커튼 박스의 길이 및 깊이는 홍보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창호 특성상 창문을 닫는 순간 잠기는 부위와 창틀 측면에 일부 떨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에는 철제 난간이 시공되며, 난간 재질 및 시공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공간별 크기는 마감재, 가구 설치 등으로 실 시공 시 안목치수가 도면과 경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정가구가 시공되는 부위의 바닥, 벽,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마루 바닥재는 자재의 수급 시점에 따라 마루코어재(바디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패턴과 색상이 균일하지 않거나 표면 텍스처, 폭, 두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실리콘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석재류는 자체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눔 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일 및 석재류 줄눈 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류 및 스위치류), 통합 스위치 등의 위치, 수량 및 사양 등이 상이합니다.
- 세대 전체 LED 조명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 가구용 조명의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용 조명이 포함된 옵션 품목 미선택 시 해당 조명은 미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품목 선택 시, 기본 냉매매립배관(거실, 침실1)은 미설치됩니다.
- 세대분전반 및 세대통신단자함은 홍보관 내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크기, 색상, 마감 재질, 및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세대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후 도배 등 마감부분에 한하여 재시공될 예정으로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홍보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분양 TYPE별 단위세대의 침실, 거실, 화장실 등의 칸막이 벽체의 구조체는 콘크리트 또는 조적, 경량벽체로 구성되며, 각 구성 벽체의 자체한 사항은 홍보관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에 설치되는 급수, 급탕 분배기는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홍보관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홍보관을 우선으로 함)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하부장 무늬 패턴은 본 공사시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포인트 타일 요철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 기본형과 확장형 레이아웃은 서로 상이하며, 주방 확장시 바뀌는 부분은 홍보관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바랍니다.
- 기본형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창호 위치 및 크기, 가스배관 및 드레인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창호방향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주방 상부장으로 지나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및 창호의 프레임, 손잡이,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59B,84B,84C타입은 렌지후드 배기덕트가 다용도실 천정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은 화장실 직배기덕트가 다용도실 천정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해 3~10층에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마감재(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윌패드, 조명기구, 배선기구, 전자식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시공되며, 개별적인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홍보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화장실 천정 점검구 개수 및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미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대는 화재에 대비하여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설치되며 홍보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및 감지기 위치, 개수는 홍보관 소방 준공용이므로 실제 시공시에는 소방법에 따라 헤드 위치나 개수가 변경됨. 또한 각 발코니에 설치되는 측벽형 헤드에 따라 각방의 커튼박스 폭이 줄어들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환기장치의 환기덕트 및 렌지후드 배기덕트 내부에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으며 렌지후드 상부장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 등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욕실 위생기구류, 액세서리의, 배기팬의 사양 및 설치위치, 설비배관(선홍통 및 배수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대는 주방 및 화장실 배기는 직배기방식이 적용되며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일부 배관 및 계량기가 노출되며, 도시가스 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홍보관 위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여부에 따라 환기디퓨저 및 스프링클러,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경우 렌지후드 및 욕실환풍 덕트가 발코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유닛 장비 및 덕트는 발코니 또는 세탁기실 천장에 노출 될 수 있고 덕트와 연결된 각 실의 디퓨저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유닛 장비로부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 등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를 선택해야하며, 설치 세대 및 인접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실이 다소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매립배관은 안방(벽걸이 에어컨용), 거실(스탠드 에어컨용) 2개소에 설치됨. 또한 욕실 에어컨설치시 안방발코니(또는 세탁실)에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에 따라 안방 커튼박스 폭이 줄어들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욕실환기팬, 환기디퓨저,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부부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나,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공용욕실 바닥난방 없음)
- 본 공사 시 가스배관 일부가 노출될 수 있으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가스쿡탑 주변 주방 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싱크대 하부 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 그릴창 사이즈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전기설비규정 282.84.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설치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별표 3의 주) 3」에 의거 세대단자함은 주변의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의해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노출된 장소(신발장, 세탁실, 베란다, 발코니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이용하여 방문자 확인, 가스밸브제어, 일괄소등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조명기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단종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태 및 모양 포함)
- 거실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9. 홍보관 안내

- 홍보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이미지.일러스트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홍보관 내 스프링클러헤드 및 소방감지기는 홍보관의 소화 시설물이며, 본

공사 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시공됩니다.

- 홍보관 내 전시 조명 및 펜던트/전자제품/가구류(침대, 소파, 식탁, 의자 등)/패브릭류(커튼, 블라인드, 담요 등) 및 각종 소품류 등은 모두 전사용품입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난방 겸용이며, 옵션 품목은 냉방 전용(공기 청정 기능 없음)으로 제조사 및 사양,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기본/옵션)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내 유니트(59A,84A)는 확장 및 옵션 품목이 적용되었으며, 기본 품목은 유니트 내 상품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의 모든 조경은 연출용입니다.

10. 공용설비 및 시스템

- 홍보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은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 될 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근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수구 위치 및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 일부에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단지 공용 태양광 설비가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 의거 단지 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옥상층(101동 1개소, 102동 1개소, 105동 1개소)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지하1층 동전기실(101동, 104동 각 1개소), 옥상층(101동 1개소, 102동 1개소, 105동 1개소)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방법과 안전, 편의성을 위해 설치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한전 지상개폐기,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차 충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경관조명설비, 공용 조명 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 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옥상/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조망 간섭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 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빗물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무인 택배 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일부동 및 일부층은 주동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내에 전기차충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위치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전기차충전설비에 대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가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 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획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주차면은 실제 주차용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상부에는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

을 수 있으며,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 등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되는 사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또는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을 위한 주차램프의 지붕 구조물에 의해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매연, 조망권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 장비 등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은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 개소에 맞게 계획하였으며, 추후 관계법령 개정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설치위치 및 설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기기의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요금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일부 주차구역은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 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내력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트렌치는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설치 예정인 주차대수는 총 691대입니다.

12. 근린생활시설

- 본 아파트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아파트 내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사업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 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차후 근린생활시설 분양 전, 일부 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별도 동의 없이 개선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일부세대는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입주자 공사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및 일부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 시 그리스트랩등을 설치(입주자 부담)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주방배기를 위한 장비 및 덕트설치는 입주자 공사분이며, 인접 점포 및 세대에서는 냄새,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점포별 냉, 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자 또는 입주자가 개별 설치 시 실외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위치에 따라 배관이 길어지거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의 증감,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공용부(복도 등)에는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임의로 설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천정고는 현장여건 및 설비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모든 옥외광고물(간판)은 조례기준에 따라 디자인 및 크기 변경, 삭제, 이동 등의 수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협의체'가 정해진 후 상가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협의체'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복도 및 상가 전용면적 천장에는 건물전체 설비(급수관, 통기관, 소화배관, 배수관, 도시가스 등) 및 전기 트레이, 덕트(소화용, 배기용 등) 등 이 설치 및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실의 천장고 차이가 다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 및 입점자는 이를 임의로 훼손 또는 철거 등 어떠한 변형을 가할 수 없으며 계약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 기타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의거하여 거래가격 6억원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및 소재지 주무관청 직접 제출 등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체결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수분양자가 직접납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제3항제29의2)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비고
2.3m 이상	2.7m 이상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표기 등

의무 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적용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울산우정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준공연도 : 20250331
 주소 : 울산 중구 우정동 274-60번지 일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29층
 연면적 : 89,447.3908㎡ (평가 연면적: 84,905.9839㎡)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동신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 G-SEED-P-2023-0240-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3.03.07.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산년

인증 등급

인증 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764호, 환경부 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토지이용 및 교통	64%
에너지 및 환경오염	65%
재료 및 자원	61%
물순환 관리	47%
유지관리	100%
생태환경	21%
일내환경	58%

종합등급 ★★☆☆

2023년 03월 07일

한국부동산원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울산우정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준공연도 : 20250331
 주소 : 울산 중구 우정동 274-60번지 일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29층
 연면적 : 89,447.3908㎡ (평가 연면적: 84,905.9839㎡)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제이에스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1-주-에-1+-0407
 평가자 : 이동형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결정 완료일

인증 등급

인증 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설계	62.0	11.1	1+	48	23.3
에너지저소비량					
에너지다소비량 건축설계					
에너지다소비량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2.9	51.6	40.3	10.8
급탕	30.7	35.5	26.3	7.2
조명	8.4	7.5	20.6	3.5
환기		3.8	10.3	1.8
합계	62.0	98.4	97.5	23.3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등 인증 등급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울산우정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 신청자 : 울산우정동 지역주택조합
 3.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74-65번지 일원
 4. 성능 등급 : 가, 소용 관련 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층계류 차단성능	★★★
2. 중앙층계류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좌우성능	★★★★
4. 교방소음(도도, 원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완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결수형 기기 사용	★★★★
19. 용 사용 모드티팅	★★
20. 단채널 녹취속 조정	-
21. 자연채널 녹취속	-
22. 생체친화적	★
23. 생활층계류(배수) 조성	★
24. 실내공간 오염물질 발생률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면적당 환기성능 확보	★★
27. 작동온도설정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 환경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채널의 보행자 견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내구성능의 근접성	★★★★
3. 자연채널의 자연 채움 및 자연채움의 적합성	★★★★
4. 생활권에서의 접근성	★★★★
5. 안전행랑의 환경관리 계획	★★★★
6. 순환-유지관리 문서 및 대응일 제공	★★★★
7. 사용자책임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면적당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트레이드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센트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난간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선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한국부동산원

■ 자금관리대리사무

· 사업주체(울산우정동 지역주택조합)은 본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우리자산신탁(주)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분양대금은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우리자산신탁(주)의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자금관리계좌"에 수납되지 아니한 어떠한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우리자산신탁(주)는 본 사업의 자금관리대리사무 수입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에 따른 자금집행을 수행하며,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책임(소유권이전사무, 하자담보책임, 분양대금 반환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분양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우리자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사업장 소재지	비고
주택건설 공사감리	(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01,065,22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5길 22-16(구평동)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주)대경기술단	616,282,7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7, 10층 (송림빌딩)	
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감리	(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70,00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5길 22-16(구평동)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주요내용

※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5-101-0003300호	22,474,14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 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흙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자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 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현황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울산우정동 지역주택조합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12 (달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등록번호	129-82-92995	215-81-40656

■ 주택전시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12번지

■ 홈페이지 : <https://brand.hldni.com/ulsanwoojung>

■ 분양문의 : 052 - 254 - 777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 함)

※ 주택전시관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어 내방하시기 바랍니다.